

郡單位地域 土地利用計劃의 合理的 策定을 위한 土地適性區分(Ⅱ)

- 土地利用適性の 綜合化 方案 -

黃漢喆 * · 崔洙明 ** · 韓京洙 **

* 安城産業大學校 農村開發學科 · ** 全南大學校 農工學科

Land Suitability Classification for Rational Land Use Planning in County(Gun) Area(Ⅱ)

- Determination of the Land Use Suitability to Integrate the Classified Values -

Hwang, Han-Cheol * · Choi, Soo-Myung ** · Han Kyung-Soo **

* Dept. of Rural Development Eng., Anseong Nat'l Univ.

** Dept. of Agricultural Eng., Chonnam Nat'l Univ.

ABSTRACT

As a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of county-level area development, this study designed 3-step framework : function-giving(areal analysis) on unit planning area by decision matrix of land suitability, check of typical characteristics of each function area and formulation of its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Two alternatives were suggested as the areal analysis method, of which one is equal ordering / valuing technique of checking indices for land suitability classification and the other preferential weighting technique. And then, under the algorithm specially defined in this study, land suitability maps(Fig.2,3) of the case study area (Seungju-county area, Chonnam-province, Korea) were drawn from the areal analysis results.

By use of land suitability classification results, unique characteristics of typical function areas were defined (on 7 types of alternative I, 8 types of II) and their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were formulated in the case study area.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criteria in this study, all the villages of the case area were classified as a suitable type of function areas illustrated in this study.

I. 序論

좁은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 즉 행정적인 수단이 완비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것과 병행해서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이 합

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고 해도 토지이용계획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지 못하면 토지이용에 관한 문제점들이 선명하게 해결되지 못할 뿐더러 효율적인 토지이용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책정을 지원하는 기법들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러한 기법개발의 일환으로 제1보(황 외 1995)에서는 토지적성구분의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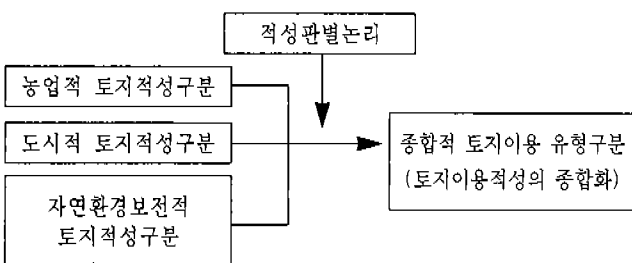
그러나, 토지적성구분은 이용목적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적성항목이 몇가지 선정될 경우, 그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특정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적성을 분석·평가하고(이상 제1보에서 다루었습), 일정한 적성판별논리를 가지고 특성을 증첩하는 종합화 과정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 책정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최종적인 적성을 판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1보에 이어 군단위지역의 대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토지이용적성을 종합화하는 과정과 종합화된 적성별 특성, 개발방향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土地利用適性の 綜合化

1. 意義

토지적성구분에 있어서 최종과제는 동일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토지이용적성을 평가하여 「최적」의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토지이용적성의 종합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군단위지역과 같은 대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의 토지적성구분은 최적 토지이용의 결정이 지역특성적 토지이용 유형을 구분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농업적, 도시적, 자연환경보전적 측면에서 평가한 단위지역별 특성을 검토(제1보 참조)하여 일정한 적성판별논리에 입각하여 각각의 적성을 판정하고 그 적성별 위치, 범위, 성격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계획안 작성단계에 필요한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이 파악되는데 그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綜合的 土地利用適性 類型 區分 節次

2. 綜合化 方法과 事例的 考察

동일한 단위지역(본 연구에서는 법정리)에 대하여 제1보에서 각각 3개의 항목별(농업도, 도시도, 자연환경보전도) 적성평가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최적토지이용적성을 도출하여 장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꾀하도록 한다.

토지이용적성을 종합화하는 방법은 계획목적, 지역별 특성등에 따라 방법을 고안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적성판별논리로 등순위·등가치 비교방법과 우선순위 부여방법을 이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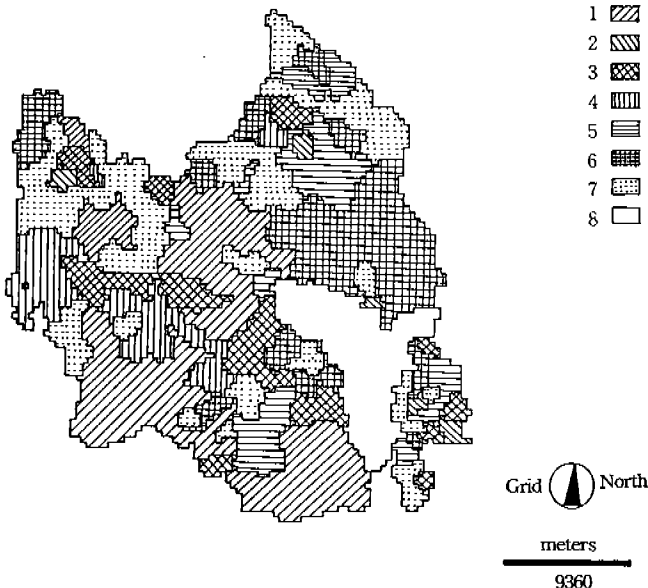
가. 等順位·等價値 比較方法 (代案 I)

농업적 토지이용적성도(農業度), 도시적 토지이용적성도(都市度), 자연환경보전적 토지이용적성도(自然環境保全度) 등 각기 다른 토지이용적성평가 결과에 있어서도 평가척도의 全長과 단위폭이 같으면 공통의 가치척도(등가치척도)상에 있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等順位·等價値 假說(3개 적성항목별 동등비교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적성판별논리에 따라 각각을 비교 평가하여 단위지역의 최종 토지이용적성을 결정하였다(대안 I). 즉, 대안 I의 방법은 <표-1>과 같이 3개 적성항목간 적성도를 동시에 평가하여 그 중 최우위 적성항목을 그 지역의 최종 토지이용적성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도, 도시도, 자연환경보전도가 각각 최우위 적성을 나타내는 지역은 「①농업지역」, 「②도시지역」, 「③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고, 농업도와 도시도의 적성이 동시에 높은 지역은 「④경합조정지역」으로 하였다. 또 농업도와 자연환경보전도, 도시도와 자연환경보전도의 적성이 함께 우위를 점하는 지역은 각각 「⑤자연환경보전형 농업지역」과 「⑥자연환경보전형 도시지역」으로, 3개의 항목이 동시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은 「⑦자연환경보전형 경합조정지역」으로 각각 정하였다(각 토지이용적성유형별 특성 및 개발방향 등은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을 토대로 연구사례지역(사례지역에 대한 개요는 제1보 참조)에 적용한 결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농업지역이 52개 마을의 18,992ha(27.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은 순천시 인근과 각 읍면소재지주변에서 나타난 ⑦자연환경보전형 경합조정지역(39개 마을의 14,944ha (21.6%))과 ⑥자연환경보전형 도시지역(24개 마을의 13,408ha(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별 분포상황은 <그림-2>의 토지이용적성구분도(대안 I)에 나타난 바와 같

다(해당마을별 토지이용 특성 및 개발방향은 제3장의 <표-4>를 참조).

<表-1> 代案Ⅰ에 의한 土地利用適性的 綜合化

토지이용적성	최우위 적성항목	면적ha(%)	마을 수(%)
① 농업지역	농업도	18992(27.5)	52(32.1)
② 도시지역	도시도	1152(1.7)	5(3.1)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도	7312(10.6)	18(11.1)
④ 경합조정지역	농업도+도시도	5952(8.6)	9(5.6)
⑤ 자연환경보전형 농업지역	농업도+자연환경보전도	7312(10.6)	15(9.3)
⑥ 자연환경보전형 도시지역	도시도+자연환경보전도	13408(19.4)	24(14.8)
⑦ 자연환경보전형 경합조정지역	농업도+도시도+자연환경보전도	14944(21.6)	39(24.1)



1:농업지역 2:도시지역 3:자연환경보전지역 4:경합조정지역
5:자연환경보전형 농업지역 6:자연환경보전형 도시지역
7:자연환경보전형 경합조정지역 8:순천시

<그림 2> 土地利用適性區分圖 (代案Ⅰ)

나. 優先順位 附與方法 (代案Ⅱ)

자연환경보전도는 농촌특성상 보전목적의 성격이 강하므로 농업적 토지이용과 도시적 토지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자연환경보전은 부가적 기능으로 설정하여 단위지역의 토지이용적성을 정하는 방법이 대안Ⅱ이다. 대안Ⅱ이 각 적성항목별로 동등한 가치와 순위를 토대로 비교평가한 것에 반하여 이 방법은 농촌의 토지이용특성상 생산터전으로서 농업적 목적의 토지이용과 생활터전으로서의 도시적 목적의 토지이용을 동등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자연환경보전도는 상기의 결과에 부차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즉, 토지이용상의 우선순위를 생산과 생활에 두고 자연환경보전도는 그 기능이 특히 높은 경우(Ⅰ등급인 경우)에만 각각 부가시켰다.

<표-2>가 대안Ⅱ의 종합화 방법이며 <표-3>이 사례지역에 적용한 결과이다. 농업도와 도시도가 동시에 양호한 지역은 「㉠경합조정지역」(T1,2,3,4)으로, 농업도가 도시도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은 「㉡농업지역」(R1,2), 반면 도시도가 농업도에 비하여 우수한 지역은 「㉢도시지역」(U1,2), 그리고 농업도와 도시도가 모두 가장 낮은 지역(각 Ⅲ등급인 경우)은 「㉣농업개발지역」(D)으로 지정하였다. 또, ㉠,㉡,㉢,㉣ 중 자연환경보전도가 Ⅰ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연환경보전형 경합조정지역」, 「㉥자연환경보전형 농업지역」, 「㉦자연환경보전형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형 농업개발지역」

<表-2> 代案Ⅱ의 土地利用適性的 綜合化 方法

구 분	농 업 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도 시 도	Ⅰ등급	T 1	T 2	U 1
	Ⅱ등급	T 2	T 4	U 2
	Ⅲ등급	R 1	R 2	D

주 ㉠경합조정지역: T1,2,3,4
 ㉡농업지역: R1,2
 ㉢도시지역: U1,2
 ㉣농업개발지역: D
 ㉤자연환경보전형 경합조정지역: T1,2,3,4 + 자연환경보전도 Ⅰ등급
 ㉥자연환경보전형 농업지역: R1,2 + 자연환경보전도 Ⅰ등급
 ㉦자연환경보전형 도시지역: U1,2 + 자연환경보전도 Ⅰ등급
 ㉧자연환경보전형 농업개발지역: D + 자연환경보전도 Ⅰ등급

역」으로 각각 정하였다. 사례지역에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㉑농업지역이 58개 마을의 24,128ha(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㉒경합조정지역으로 전체면적의 30.8%인 21,264ha(55개 마을), 그리고 25개 마을의 13,488ha(19.5%)를 점하고 있는 ㉓도시지역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안Ⅰ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평야지역이 농업지역으로, 읍면소재지 및 순천시주변이 도시지역과 경합조정지역으로, 또한 중산간지 등의 원격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개

발지역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을별 분포상황을 나타낸 것이 <그림-3>의 토지이용적성구분도(대안Ⅱ)이다(제3장의 <표-5>에서 각 해당마을과 토지이용적성별 특성과 개발방향을 나타내고 있음).

3. 代案別 比較 考察

이상에서 살펴 본 대안Ⅰ,Ⅱ의 방법론적 차이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안Ⅰ은 3개의 적성함구간의 관계에서 적성평가지치를 동일한 가치척도상에 놓으면서 우선순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적성을 종합화한 반면, 대안Ⅱ는 적성평가지치 자체는 동일 가치척도상에서 다루었지만 토지의 이용 가치상의 비중을 크게 두어 생산 및 생활목적인 농업도와 도시도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보전적 기능을 지닌 자연환경보전도를 뒤로 하여 토지이용적성을 종합화하였다.

즉, 대안Ⅰ은 대안Ⅱ에 비해 자연환경보전기능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지역의 결과를 보면 자연환경보전 기능을 지닌 지역이 대안Ⅰ에서는 전체면적의 62.2%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안Ⅱ는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토지이용적성구분 결과를 비교해 보면, 농업지역(자연환경보전형 포함)이 대안Ⅰ은 전체면적의 38.1%과 대안Ⅱ는 38.6%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형 포함)도 마찬가지로 각각 21.1%, 20.6%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합조정지역(자연환경보전형 포함)도 대안Ⅰ이 30.2%, 대안Ⅱ가 32.8%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안Ⅰ은 토지이용목적상 자연환경보전 전용의 지역으로 10.6%, 대안Ⅱ는 농업도와 도시도 모두 가장 낮은 농업개발지역이 7.9%를 각각 별도로 점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의 선택방법은 각 대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대상지역의 성격, 계획목적, 토지이용방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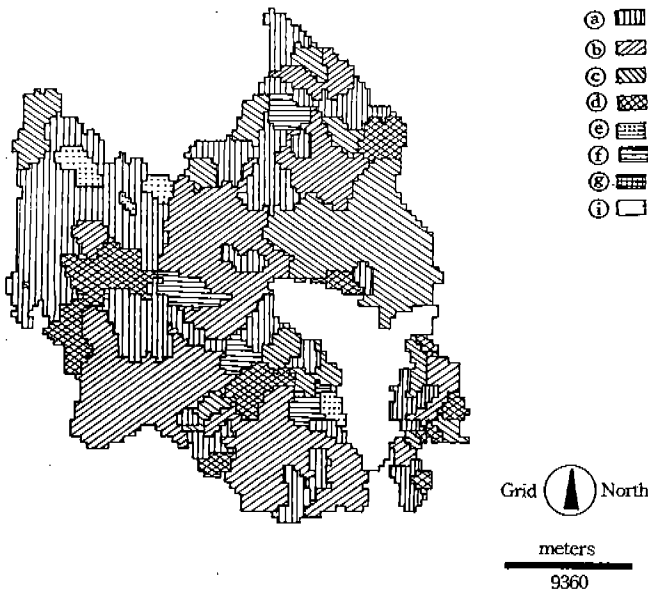
Ⅲ. 土地利用適性別 特性 및 開發方向

1. 代案Ⅰ에 따른 土地利用適性別 特性 및 開發方向

대안Ⅰ에서 제시한 7종의 토지이용적성별 특성, 장래 개발방향 및 사례지역의 해당마을을 살펴 보면 <표-4>와 같다.

<表-3> 代案Ⅱ의 土地利用適性區分 結果

표지 이용 적 성	면적 ha(%)	마 을 수
㉑ 경합조정지역	21264 (30.8)	55 (34.0)
㉒ 농업지역	24128 (34.9)	58 (35.8)
㉓ 도시지역	13488 (19.5)	25 (15.4)
㉔ 농업개발지역	5472 (7.9)	11 (6.8)
㉕ 자연환경보전형 경합조정지역	1392 (2.0)	6 (3.7)
㉖ 자연환경보전형 농업지역	2560 (3.7)	5 (3.1)
㉗ 자연환경보전형 도시지역	768 (1.1)	2 (1.2)
㉘ 자연환경보전형 농업개발지역	0 (0.0)	0 (0.0)



㉑:경합조정지역 ㉒:농업지역 ㉓:도시지역 ㉔:농업개발지역 ㉕:자연환경보전형 경합조정지역 ㉖:자연환경보전형 농업지역 ㉗:자연환경보전형 도시지역 ㉘:순천시

<그림-3> 土地利用適性區分圖(代案Ⅱ)

농업용지(농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형 농업지역)로서 적성이 우수한 지역은 전체마을 162개 마을 중 67개 마을(41.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 지역은 농업환경보전, 농업기반정비 및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적성이 높은 지역은 농업적 토지이용과 도시적 토지이용이 결합되는 지역 또는 농업적, 도시적, 자연환경보전형 토지이용이 서로 상충되는 지역이 전체마을의 29.7%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읍면 소재지 또는 순천시 인근지역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있는데, 토지이용상 가장 혼란이 초래되는 지역으로서 양자 또는 삼자간의 토지이용조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주변의 농업환경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도시적 토지이용과 유기성을 지니고, 자연환경에 손상을 주지않는 토지이용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도시용지(도시지역(31%), 자연환경보전형 도시지역(14.8%))로 대부분 승주읍 중심지 또는 일부 면소재지, 그리고 각 소재지와 순천시 주변지역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본 지역은 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 공공서비스 등 생활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능이 충실히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형지역이 전체의 11.1%를 점하고 있다. 이는 사례지역 자연자원의 우수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을 통한 지역발전도모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代案Ⅰ에 따른 土地利用適性別 特性 및 開發方向

〈表-4〉 土地利用適性類型別 特性, 開發方向 및 해당마을 (代案Ⅰ)

구 분	특성 및 개발방향	해당마을 (읍면별 마을번호)
① 농업지역	농업적 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장래에도 농업적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하고, 도시적 이용전환을 강하게 규제해야 할 지역	승주 2, 3, 4, 6, 7, 8, 11, 13, 14 주암 20, 21, 33, 송광 35, 42, 46, 47 외서 48, 49, 50, 51, 52, 53, 54, 55 낙안 60, 61, 62, 63, 64, 65, 67, 68, 72, 73 별량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② 도시지역	현재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며, 장래에도 도시적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정비해야 할 지역	주암 27 해룡 110, 114 서 130 황전 140
③ 자연환경보전형지역	임야 등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장래에도 지역의 자연환경보전형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지역	승주 12 주암 17, 23, 30 송광 37 낙안 66 상사 97, 98, 99, 102, 104 해룡 105, 109, 113, 115, 122 황전 141
④ 결합조정지역	농업적인 토지이용적성뿐만 아니라 도시적 토지이용적성이 동시에 양호하여 토지이용이 결합되는 지역으로서 양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여 조정이 필요한 지역	주암 24 송광 38, 39, 40, 43, 45 낙안 71, 74 월등 153
⑤ 자연환경보전형 농업지역	농업적 토지이용특성이 강하나 자연환경보전형기능이 중요시되는 지역으로서 장차 토지이용목적상 자연환경보전형기능을 고려하면서 농업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	승주 1, 10 별량 93 상사 100 해룡 107, 112, 116, 119 황전 137, 138, 139, 142, 145, 148 월등 160
⑥ 자연환경보전형 도시지역	농업적 토지이용특성이 강하나 자연환경보전형기능이 중요시되는 지역으로서 장차 토지이용목적상 자연환경보전형기능을 고려하면서 도시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	주암 29, 낙안 56, 59 상사 94, 96, 101 해룡 106, 118 서 123, 124, 125, 126, 127, 128, 131, 132, 133, 134, 135, 136
⑦ 자연환경보전형 결합조정지역	농업적 또는 도시적으로도 토지이용의 특성이 강하면서 동시에 자연환경보전형기능이 중요시되는 지역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 장차 이와 같은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한 지역	승주 5, 9 주암 15, 16, 18, 19, 22, 25, 26, 28, 31, 32, 34 낙안 57, 58, 69 70 상사 95 해룡 108, 111, 117, 120, 121 서 129 황전 143, 144, 147, 149, 151, 152 월등 155, 156, 158, 159, 161, 162

대안Ⅱ에서 제시한 8종의 토지이용적성별 특성, 장래 개발방향 및 사례지역의 해당마을을 살펴 보면 <표-5>와 같다.

대안Ⅰ과 비교해 마을간의 그 이용적성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앞서 대안간 비교·고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체적(면적 및 마을수)으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이 농업용지(농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형 농업지역)로 전체마을162개 마을 중 63개 마을(38.9%)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적극적인 농업기반정비를 비롯한 각종 농업생산환경시설을 갖추어 농업지역으로서의 터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농업적 토지이용과 도시적 토지이용이 결합되는 지역의 경합조정지역으로 전체마을의 37.7%(이중 자연환경보전형이 3.7%)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토지이용상 가장 많은 혼란이 초래되는 지역으로서 장차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것인가 또는 농업목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

전체마을의 16.6%(자연환경보전형 1.2%)를 점하고 있는 도시지역은 주로 행정소재지와 순천시 주변지역이 해당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각종 서비스 중심지 기능이 제대

<표 5> 土地利用適性類型別 特性, 開發方向 및 해당마을(代案Ⅱ)

구 분	특성 및 개발방향	해당마을 (읍면별 마을번호)
㉑ 경합조정 지역	대안Ⅰ의 경합조정지역과 동일	승주 5, 9 주암 15, 16, 18, 20, 21, 22, 25, 26, 27, 28, 31, 32, 33, 34 송광 38, 39, 40, 43, 44, 45 낙안 57, 58, 64, 67, 69, 74 별량 75, 78, 86, 89, 상사 95, 97 해룡 108, 110, 111, 117, 120, 121 서 129 황전 140, 143, 144, 147, 149, 151 월등 153, 155, 156, 158, 159, 161, 162
㉒ 농업지역	대안Ⅰ의 농업지역과 동일	승주 1, 2, 3, 4, 6, 7, 8, 10, 11, 13, 14 송광 35, 42, 46, 47 외서 48, 49, 50, 51, 52, 53, 54, 55 낙안 60, 61, 62, 63, 65, 68, 71, 72, 73 별량 76, 77, 80, 81, 82, 83, 84, 85, 87, 88, 90, 91, 92, 93 상사 100 해룡 107, 112, 116, 119 황전 137, 138, 139, 142, 145, 148 월등 160
㉓ 도시지역	대안Ⅰ의 도시지역과 동일	주암 29, 낙안 56, 59 상사 94, 96, 101 해룡 106, 114, 118 서 123, 124, 125, 126, 128, 130, 131, 132, 133, 134, 135, 136 황전 146, 150 월등 154, 157
㉔ 농업개발 지역	농업적인 토지이용적성이 매우 낮은 뿐만 아니라 도시적 토지이용적성도 월등히 낮은 지역이므로 적극적으로 농업개발을 추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지역	송광 36, 37, 41 낙안 66, 70 해룡 105, 109, 113, 115, 122 황전 152
㉕ 자연환경 보전형 경합 조정지역	대안Ⅰ의 자연환경보전형 경합조정지역과 동일	주암 17, 19, 23, 24, 30 상사 163
㉖ 자연환경 보전형 농업지역	대안Ⅰ의 자연환경보전형 농업지역과 동일	승주 12, 상사 98, 102, 104 황전 141
㉗ 자연환경 보전형 도시지역	대안Ⅰ의 자연환경보전형 도시지역과 동일	상사 99 서 127
㉘ 자연환경 보전형 농업 개발지역	농업적인 토지이용적성이 매우 낮은뿐만 아니라 도시적 토지이용적성도 월등히 낮은 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형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을 고려하면서 농업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지역	해당마을 없음

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적 조건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도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장차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농업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할 농업개발지역이 전체의 6.8%(자연환경보전형 농업개발지역은 전무)를 점하고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중산간지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살려 산지형 농업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Ⅳ. 結 論

군단위 규모의 대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토지적성구분기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제1보에서는 토지적성구분의 방법론을, 본 제2보에서는 동일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항목별(농업도, 도시도, 자연환경보

전도)로 각각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적성을 종합하여 최적토지이용적성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고찰하고, 도출된 토지이용적성의 유형별 특성 및 장래 개발방향을 모색하였다.

토지이용적성의 종합화 방법으로 토지적성평가항목별 등순위·등가치 비교방법(대안Ⅰ)과 우선순위 부여방법(대안Ⅱ)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적성판별논리에 따라 적성결과를 종합하여 사례지역의 토지이용적성구분도(그림-2, 3)를 작성하였다. 이의 각 대안은 대상지역의 성격과 계획목적에 따라 선정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각 대안별로 최종적으로 도출된 토지이용적성유형별(대안Ⅰ : 7종, 대안Ⅱ : 8종)로 그 특성을 규정하고 장래 개발방향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유형별 각 해당마을을 분류하였다(표-3, 4). 이는 장차 군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마을의 정비방향을 정하는 유효한 자료가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황한철 외(1995), 군단위지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토지적성구분(Ⅰ) - 토지적성구분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1 No.1, pp.65-74
2. Brinkman, R. and Smyth, A.J. (1973), Land Evaluation for Rural Purpos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nd Reclamation and Improvement (ILRI), The Netherlands
3. Vink, A.P.A. (1975), Land Use in Advancing Agriculture, Springer-Verlag
4. 西口 猛(監修)(1981), 土地分級, 農林統計協會
5. 星野敏外(1992), わが國における土地分級研究の系譜, 農業土木學會論文集, 157
6. 和田照男(1980), 現代農業と土地利用計劃, 東京大學出版會
7. 黃漢喆 外(1993), 筆地利用適性判別論理の構築-聚落土地利用計劃の合理的策定のための4地目型筆地分級手法の開発(2)-, 農村計劃學會誌, Vol.12 No.3, pp.20-29